

의정부지방법원 2023. 7. 13 선고 2022나21372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재

피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우

담당변호사 구성진

변 론 종 결 2023. 6. 15.

판 결 선 고 2023. 7. 13.

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. 7. 20. 선고 2021가단103764 판 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와 C상가건축조합(이하 ‘이 사건 조합’이라 한다) 사이에 2020. 6. 15. 체결된 컨설팅계약(이하 ‘이 사건 컨설팅계약’이라 한다)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,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도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이 법원에서도, 이 사건 조합이 2020. 11.경 조합을 해산하는 결의를 하면서 조합장으로 일한 원고에 대하여 126,000,000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므로,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126,000,000원의 보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조합과 피고 간에 체결된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.

나. 판단

원고가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보수 채권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, 이 사건 조합의 정관(갑 제2호증)에 조합장에 대한 보수 지급 규정이 없는 점은 다툼이 없고,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조합의 2020. 11. 14.자 조합 임시총회 회의록(갑 제3호증)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수 지급 결의에 관한 기재가 없으며, 달리 이 사건 조합에서 원고에 대한 보수 지급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[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이정완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고, 위 사실확인서에는 원고의 주장과 부합하는 듯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, 조합원 중 1인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에서 원고에

대한 126,000,000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에 관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,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이 사건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].

3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귀옥, 판사 이민영, 판사 옥제영